

문서번호	일자리경제과-29216
결재일자	2016.6.1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시장지원팀장	일자리경제과장	기획경제국장
김성희	이태익	김정애	06/16 고재풍
협 조			

- 자양전통시장 고객센터 -
관리위탁 실태 및 재계약 검토 보고



기 획 경 제 국
(일 자 리 경 제 과)

- 자양전통시장 고객쉼터 - 관리위탁 실태 및 재계약 검토 보고

- 전통시장의 편안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된 자양시장 고객쉼터의 관리위탁 실태를 점검하고,
-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.

I 추진 근거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, 제22조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제35조 및 제38조
-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
- 전통시장 고객쉼터 운영계획(일자리경제과-2014.06.13)

II 재산 및 관리 현황

위 치	독성로47길 45-2(자양동)		
재 산 성 격	행정재산(공공용재산)		
위 탁 기 간	2014. 6. 23. ~ 2016. 6. 22.		
수탁 관리자	자양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		
시설용도 및 규모	지상3층 연면적 265.59㎡	1층(96.95㎡)	고객쉼터, 배송센터, 물품보관소, 화장실
		2층(104.40㎡)	작은도서관, 조합사무실, 화장실
		3층(64.24㎡)	다목적실
비 고			

Ⅲ 관 리 실 태

○ 1층 : 고객 휴식 공간, 배송센터, 물품보관소, 개방화장실

- 배송센터 사무실 공간을 축소하여 물품보관소(전액 시비)를 설치하고, 고객휴식공간을 확장하여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

○ 2층 : 작은 도서관, 조합 사무실, 화장실

- 조합사무실 용도 외에는 상시적인 공간 활용이 적었으나, 반납 예정이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, 유아를 둔 젊은 주부들의 전통시장 이용도를 높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구민 독서분위기 확산에도 기여

○ 3층 : 다목적 회의실

- 상인교육 및 조합원 총회와 인근 지역주민 대상 문화 강좌 교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소음과 딱딱한 바닥 등으로 인해 회의장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
- 골목형 사업 추진 시, 방음·바닥제 교체 등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유치 예정

○ 기타 : 관리위탁기간 조정

- 관리위탁기간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
- 변경기간 : 2016. 6. 23 ~ 2018. 12. 31 (약 2년 6개월)

※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

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IV 관리위탁 재계약안

□ 계약개요

- 계약당사자
 - 위탁자 :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 - 수탁자 : 자양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
- 계약방식 : 관리위탁
- 계약기간 : 2016. 6. 23 ~ 2018. 12. 31 (약 2년 6개월)

□ 계약 주요 내용

- 위탁기간(제4조) : 2016. 6. 23 ~ 2018. 12. 31 (약 2년 6개월)
- 사 용 료(제5조) : 무상
 - 사유 : 공공시설 설치 목적 실현을 위한 유지관리 위탁
 - 관련근거 :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
- 수탁자의 주요 의무사항(제6조)
 - “광진구”의 승인 없는 사용목적의 변경, 위탁시설의 전대 및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경 금지
 - “광진구”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 시, 이를 준수해야 함
- 관리책임(제8조)

위탁자	수탁자
-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·보수	-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장활성화 사업 목적에 맞도록 관리 - (대규모 수리 외) 유지관리 비용 부담

○ 민·형사상 책임(제10조)

- “자양시장”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, 건물을 관리·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은 “자양시장”이 짐

- 붙임 1. 관리위탁계약서 1부.
2. 고객쉼터 위탁관리 관련 규정. 끝.